

의안번호	2213570
의 퇴 인	이용우의원
회 답 일	2025.10.16.
추계번호	25B5544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6조의3 (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) 신설	누구든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(제2항) 1.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. 신고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, 과징금 등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	
		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·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66조의3 (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) 신설	—	• 미대상(제1항) – 개정안은 누구든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		×	• 미첨부(제2항 및 제3항) –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– 본문참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명령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가 산업재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신고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, 과징금 등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은 포상금의 지급 대상·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며, 포상금의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또한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 건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assembly.go.kr